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3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복기왕·전현희·서삼석

김용만 • 이병진 • 홍기원

임호선 • 유동수 • 이정문

민형배 • 문진석 • 정준호

조승래 · 노종면 · 박정현

김영배 • 박희승 • 전재수

안태준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.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 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,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(공동관리규정)으로 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. 특히,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 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.

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 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4(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) 울산과기원은 데이터관 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·보존·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,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·개방 및 공동활용 을 위한 공유·연계 등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2조의4(연구데이터의 관리 및
	활용 활성화) 울산과기원은 데
	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
	<u>터 생산·보존·관리의 충실성</u>
	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
	하여야 하며, 연구 결과의 확산
	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
	는 연구데이터의 생산・보존・
	<u>관리·개방 및 공동활용을 위</u>
	한 공유・연계 등에 관한 적극
	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